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민병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2

발 의 자 : 민병덕 · 이수진 · 송영길
송재봉 · 김문수 · 권향엽
임오경 · 김태년 · 김영배
이강일 · 진성준 · 전종덕
김남근 · 염태영 · 오세희
정진욱 · 이주희 의원
(17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5·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교육·취업·의료 등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, 보훈급여금의 지급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. 이는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일시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별도 예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금전적 예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따른 것임.

5·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 예우를 위해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 다만 기존 보상금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, 지급 조정 및 중복수급 방지의 기준을 함께 마련

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가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(안 제7조의2제1항).
- 나.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·수당·사망일시금 등으로 정하고, 대상·지급액·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).
- 다. 기존 보상금과 동일한 지급사유 또는 성질의 급여는 조정하도록 함(안 제7조의2제4항).
- 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동일 성질의 보훈급여금을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(안 제7조의2제5항).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보훈급여금) ① 국가는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상금

2. 수당

3. 사망일시금

4. 그 밖에 5·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

③ 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대상, 지급액, 지급기간,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5·18민주유공자의 희생 또는 공헌의 내용과 정도,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및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때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이미 지급된

보상금 등과 동일한 지급사유 또는 성질의 급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동일한 지급사유 또는 성질의 급여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상금 등의 범위, 급여의 성질 구분, 지급액의 조정 기준·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존 보상금 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「5·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종전의 보상금 등을 받은 사실만으로 보훈급여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2(보훈급여금) ① 국가는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보상금</u> <u>2. 수당</u> <u>3. 사망일시금</u> <u>4. 그 밖에 5·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</u> <u>③ 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대상, 지급액, 지급기간,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5·18민주유공자의 희생 또는 공헌의 내용과 정도,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및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<u>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때</u>

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 등과 동일한 지급사유 또는 성질의 급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동일한 지급사유 또는 성질의 급여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상금 등의 범위, 급여의 성질 구분, 지급액의 조정 기준·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